

화순군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심사 보고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화순군수
- 나. 회부일자 : '97. 4. 10
- 다. 상정일자 : '97. 4. 17 (제54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

- 가. 제안설명자 : 지역경제과장 임양환
- 나. 제정이유
 - 화순군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내용 중 조례의 취지와 상호 일치시키기 위해 자구를 수정코자 함.
- 다. 주요내용
 - 화순군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중 그 취지에 맞지 않는 동 조례 제2조 위원회의 기능 중 지방공사 의료수가 결정은 보건복지부 사항으로 금회 삭제하고 동 조례 제3조 지방의회 의원등의 인사와를 군의원으로 개정함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음.

3.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임근성)

- 동 조례 개정안은 화순군의 물가 안정을 위해 협의 조정키 위한 위원회를 두고 주민생활의 안정을 위한 각종 사용료 및 요금 기타 수수료를 결정키 위함인바, 금회 동 조례 개정에 따른 절차상 화순군 조례규칙 심의회 심의를 거치는 등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됨.

4. 질의 답변 요지

" 생략 "

5. 토론요지

" 생략 "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

첨 부 : 화순군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부. 끝.

화순군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97 - 46
----------	---------

제출일자 : 1997. 4. 10

제출자 : 화순군수

1. 제안이유

화순군물가대책위원회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내용중 일부내용이 조례 취지 내용과 일치하지 않아 상호 일치시키기 위하여 동조례를 개정하기 위함.

2. 주요골자

가. 위원회의 구성

20인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부군수 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나. 기능

1. 협의기능

가. 물가관련 규정의 제정 및 개정

나. 지역물가 안정대책 수립 및 시행

다. 물가관련기관 단체간 협조에 관한 사항

라. 물가안정 동참 분위기 확산을 위한 대주민 계도에 관한 사항

마. 기타 물가안정 및 소비생활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2. 심의기능

가. 상수도 요금, 하수도 요금, 공업용수 사용료, 도시가스 요금, 교통 요금, 기타등을 심의한다.

다. 회의

1.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화순군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화순군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항 중 제8호를 삭제한다.

제3조 3항 중 "장과"를 "장"으로 하고 "지방의회 의원등의 인사와"를 "군의원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 (기능) ①~② (생략) 1~5 (생략)	제2조 (기능) ①~② (현행과 같음) 1~5 (현행과 같음)
6. 지방공사 의료원등의 의료수가 7~9 (생략)	(삭 제) 7~9 (현행과 같음)
제3조 (위원회의 구성) ①~② (생략) ③ 위원은 물가와 관련되는 기관 및 단체의 장과 교수, 언론인, 지방의회 의원등의 인사와 소속 직원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④ (생략)	제3조 (위원회의 구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 - - - - - 장, - - - - - 군의원과 - . ④ (현행과 같음)